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**보 도 자 료**	(배포) 2018. 3. 7(수)
3월 7일(수) 16:00 이후 사용		
비고	# 브리핑 : 3. 7(수) 14:00, 정부세종청사, 규제혁신기획관	
담당	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	과장 임택진, 사무관 오수미 (044-200-2630, 2633)

국민의 규제애로, 규제개혁신문고가 해결합니다.

- 새 정부 「규제개혁신문고」 운영성과 발표 -

▸ **새 정부 출범이후 올해 1월까지 국민건의 총 1,159건 접수·처리**

▸ **새 정부의 규제개혁신문고 국민참여 기반 조성 강화 조치**
- **‘규제개혁신문고’ 법제화 추진**
- **국민건의 전용 홈페이지(www.sinmungo.go.kr) 개설 등**

▸ **국민 참여로 바뀐 ‘국민 삶 속의 규제혁신 대표사례’**
- **공공임대아파트 단지내 가정어린이집 허용**
- **어르신 낙상방지용 에어백 허용**
- **온라인쇼핑업체 건축물 용도규제 합리화**

□ **국무조정실**(국무조정실장 홍남기)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월까지 ‘**규제개혁신문고**’(www.sinmungo.go.kr)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통해 개선한 **민생·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성과**를 발표했습니다.

□ **규제개혁신문고**(이하 ‘**규제신문고**’)는 국민 누구나 현장에서 겪는 규제애로를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**국민건의 접수창구입니다.**

○ 특히, 정부가 규제혁파를 추진하고 있는 **3대 중점분야*** 중 **‘국민불편·민생분야’** 규제혁신을 위한 핵심 국민소통 창구입니다.

* (3대 중점분야) ①미래 신산업 ②일자리 ③국민불편·민생

○ ‘14년 3월 개설이후 글로벌 모범사례로 선정되는 등 **규제개혁 정책의 국민체감도 제고**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

* 글로벌 규제개혁 모범사례(’16, OECD 규제개혁보고서), 차기정부가 계승해야 할 역대정부 정책(’17, 상경계열 교수 및 연구소 대상 조사) 등에 선정

□ **새 정부 출범이후** 정부는 규제혁신 제반과정에서 규제신문고를 통해 **국민의 참여를 확대·강화**할 수 있는 **기반조성**에 힘써 왔습니다.

○ 우선, **규제신문고 운영의 법적근거**를 마련하고자 **행정규제기본법 개정**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- 종전 국민의 단순한 규제정비 ‘의견제출’을 **‘국민요청’으로 강화**하여 국민 누구나 기존 규제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고,
- 이에 대해 **정부가 답변·소명 의무**를 지는 내용이 담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12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.

< **국민건의 ‘규제신문고 처리절차(3단계)’**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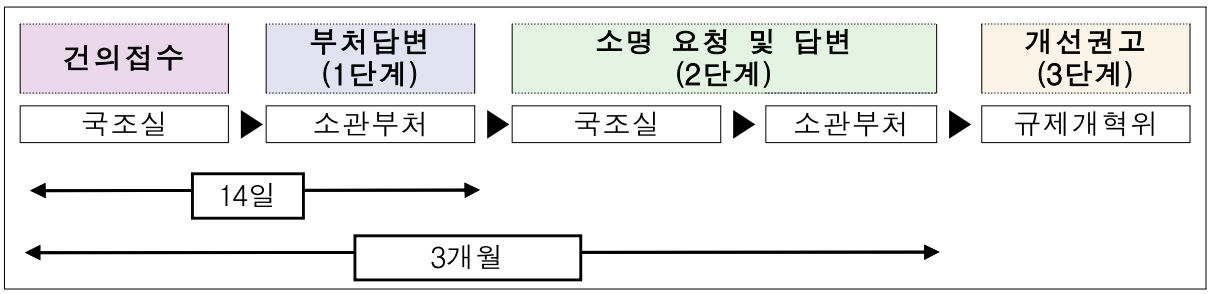

○ 또한, 기존 규제개혁위원회 사이트 일부로 운영되던 규제신문고를 **‘국민건의 처리전용 사이트’(www. sinmungo.go.kr)**를 마련하여 새로이 개설했습니다.

- 국민입장에서 건의와 처리결과 조회 등 정책참여가 편리하게 개선됐습니다.

○ 아울러, **종전 부처·지자체별로 분산**되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규제개선 **국민 건의 접수창구를 규제신문고로 일원화**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

- 우선적으로 **중앙부처(총41개 기관) 홈페이지와** 규제신문고 **연계를 완료**했습니다.

* **단계적 통합일정**: 중앙부처(’17년) → 광역단체(’18년, 17개) → 기초단체(’19년, 226개)

□ 새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월말까지 **규제신문고를 통해 국민건의 총 1,159건**을 접수·처리했으며, **국민참여로 바뀐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**는 다음과 같습니다.

1. 중소기업·소상공인 애로 해소

① 중소 영세업체에게 불리한 차별적 계약관행을 시정하여 능력있는 중소업체의 시장진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**'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계약시 불합리**하게 행해진 **관행**을 **개선'** 했습니다.

◈ 공공기관 구내식당 불합리한 위탁 계약관행 개선 (기재부)

▪ 기존 공공기관의 구내식당 위탁계약시 평가기준, 입찰제한 등 중소업체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계약관행으로 영세업체의 시장진입 곤란

▪ 개선 차별적 계약관행 시정 및 중소기업 참여특례 신설

- 과도한 실적요구, 우선조달위반, 부당한 자격제한 등 규정위반·부당관행 → 시정조치 및 사례전파
- 단년도 매출 2.1억원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유도

< 다년도 기준과 단년도 기준 비교(예시) **>**

다년도 기준(기존)	단년도 기준(개선)
△ 추정가격 6억원(3년 기준) → 일반경쟁(대기업 참여)	△ 추정가격 2억원(1년 기준) → 중소기업간 경쟁

⇒ 시정조치사례전파 및 '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 계약 특례 개정('17.12월 '18.1월 시행)

② 주류 운송시 **차량 1대당 해당 주류업체 1개 회사의 제품만 배송**할 수 있었던 **주류운송규제**를 **개선**하여 물류업체의 **위탁배송**을 **허용**하고 다른 회사 주류도 **공동으로 배송**할 수 있게 됐습니다.

◈ 주류운송규제(1차량·1주류업체) 개선으로 공동배송 허용 (국세청)

▪ 기존 소주·맥주 등 주류 운반시 검인스티커를 받은 본인 소유 또는 임차한 차량 1대당 해당 주류업체(제조·수입업체) 1곳의 제품만 배송 가능

- 위탁배송이 불가하고, 해당업체 주류만 적재·운송(1차량·1주류업체) → 공동배송 불가(공차운행 등으로 물류비 증가)

▪ 개선 주류 제조업자 등은 물류업체를 이용한 주류 위탁배송 허용하고, 물류업체를 통한 주류 운반시 공동배송도 허용(공동 적재 및 일반상품 혼합 적재 등)

⇒「주류의 양도·양수방법,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고시」 개정('17.12월)

③ 식품의 **원재료 통칭명칭**(야채, 고기, 곡물 등)은 **원재료 기준**(2가지 이상&그 합계량이 15% 이상)을 **충족**하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했으나, **원재료 기준을 폐지**하고 **원재료명과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**하도록 개선합니다.

◈ 식품 제품명 '원재료 통칭명칭' 사용기준 개선 (식약처)

▪ 기존 원재료를 통칭하는 명칭(야채, 고기, 곡물 등)은 원재료 2가지 이상, 합계함량이 15%이상일 경우에만 식품 제품명에 사용 가능

* 원재료 통칭명칭 제품명(예시) : 고기만두, 곡물차, 야채햄 등

- 통칭명칭 해당 여부 판단기준이 불명확하고, 2가지 이상의 원재료 합계함량 15% 준수가 어려운 경우 발생 → 신상품 개발 애로

▪ 개선 2가지 이상의 원재료 합계량 기준(15% 이상) 폐지하고, 통칭명칭에 해당하는 원재료명과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할 경우에는 사용 가능

⇒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 개정('18.5월)

④ **김치류 전통식품 품질인증**의 경우 **절임배추를 구매**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**인증기준을 김치제조 분업화 추세**에 맞춰 **합리적으로 개선**했습니다.

◈ 김치류 전통식품 품질 인증기준 합리화 (농식품부)

▪ 기존 김치류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절임배추를 직접 생산·제조해야만 인증 가능

▪ 개선 김치제조 분업화 추세에 맞춰 절임공정을 위탁하여 절임배추를 생산한 경우에도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기준 합리화

⇒「전통식품 표준규격 고시」 개정('17.10월)

⑤ **동영상 제작서비스**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의 **생산인력 보유요건**을 3명에서 2명으로 **완화**하여 능력 있는 영세업체의 정부 조달시장 진입이 활성화됩니다.

◈ 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 확인증명 인력요건 완화 (중기부)

▪ 기존 동영상제작서비스의 직접생산 확인기준* 중 생산인력 보유요건은 대표자 외 2명이상의 상시근로자로 규정

*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이를 공공기관에 생산·납품하기 위해서는 '직접생산 확인증명' 필요

▪ 개선 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확인 기준 중 '생산인력 보유요건' 완화(대표자 제외 2인 이상 → 대표자 포함 2인 이상)

⇒「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」 개정('17.9월)

2. 국민 불편 해소

① 공공임대아파트내 **영유아 비율이 높아** 어린이집 수요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'주거목적외 사용금지'의 입주조건을 개선, **'공공임대아파트내에도 가정어린이집을 운영'** 할 수 있게 됩니다.

◈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가정어린이집 허용 (국토부)

▪ 기존 공공임대아파트는 실거주 의무 및 주거목적 외 사용금지 등의 입주조건으로 인해 가정어린이집 설치 불가

▪ 개선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도 일부 세대를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

⇒「공공주택 특별법」 개정('17.10월, '18.4월 시행)

② 가사도우미, 골프장캐디 등 **현금급여 수령자**는 **소득증명서류가 없어 저축은행 대출**이 **불가**하였으나, **신용평가사 추정소득** 등을 증명자료로 **대체 허용**하여 5백만원까지 **대출이 가능**하게 됐습니다.

◈ **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저축은행 대출 지원** (금융위)

▪ 기존 현금급여 수령자*는 소득증명 서류가 없어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 불가, 저축은행 대신 대부업체를 이용한 대출로 높은 금리부담 사례 다수

* 가사도우미, 골프장 캐디, 음식점 종업원 등 금융소외계층

▪ 개선 5백만원 이하의 저축은행 신용대출은 신용평가사 추정소득, 근무지 대표자가 서명·날인한 소득확인서 등으로 소득증빙 자료 대체 허용

⇒「저축은행 표준대출 규정」 개정('17.10월)

③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는 前 남편 친생자로 추정, **추정번복**은 **'가사소송사건' 절차**를 통해서만 **가능**하였으나,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**간소한 '가사비송사건' 절차**를 통해 추정 번복이 가능해집니다.

◈ **이혼 후 출생자녀 친생부인(親生否認) 절차 간소화** (법무부)

▪ 기존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예외 없이 '前남편의 친생자로 추정'되며, '친생부인'의 소(訴)에 의한 엄격한 소송절차 후 추정 번복 가능

▪ 개선 가정법원의 허가*를 받은 경우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는 '친생부인'의 소(가사소송사건)보다 간소한 '가사비송사건' 절차 마련

* 혈액형·유전자검사 등 과학적 방법 또는 장기간 별거 등 고려하여 결정

⇒「민법」 개정('17.10월, '18.2월 시행)

3. 새로운 시장 기회 창출

① **어르신 낙상방지용**으로 개발된 **엉덩이 에어백**은 부품인 **가스발생기가** 미량의 화약을 함유하고 있어 수출입·제조·판매과정에서 **엄격하게 화약 규제**를 받고 있으나, **안전성이 검증된 가스발생기**가 포함될 경우 **자동차용 에어백**과 같이 **화약규제 적용을 받지 않게** 됩니다.

◈ **'어르신용 엉덩이 에어백' 화약규제 합리화** (경찰청)

▪ 기존 에어백 부품(에어백용 가스발생기)도 미량의 화약이 포함되어 있어, 원칙적으로 제조·유통 과정에서 화약제품에 준하는 엄격한 규제 적용
- '자동차 에어백용'은 규제적용 예외, 동일한 부품을 낙상방지용 '엉덩이 에어백'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제적용

▪ 개선 안전성이 검증된 '가스발생기'가 포함된 인체보호용 에어백에 대해서는 동 규제 적용 예외를 인정(자동차용 → 인체보호용)

⇒ 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개정('18.6월, '18.12월 시행)

② **판매매장이 없는 통신판매업체**에 대해서도 **축산물 판매시** 오프라인 매장 규제가 적용되어 건축물용도가 **'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'**에서만 가능하였으나, 건축물용도 **'업무시설'**에서도 **허용**됩니다.

◈ **인터넷 통신판매업체 건축물 규제 완화** (식약처·국토부)

▪ 기존 매장이 없는 통신판매업체인 경우에도 소재한 건축물 용도가 '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'에서만 축산물판매업 허용(온라인 판매업 특성 미반영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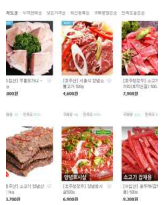

▪ 개선 매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통신판매업체에 한하여, 건축물의 용도가 '업무시설'에서 축산물 판매업 영업 허용

⇒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건축물 용도규제 적용완화 지자체 안내('18.1월)

③ **수입 냉동치즈**는 유가공업자(제조업)만이 해동 후 유통이 가능하였으나, 제조업수준의 위생관리를 전제로 **수입판매업자도 해동후 유통이 허용**됩니다.

◈ **수입판매업자도 냉동치즈 해동 후 유통 허용** (식약처)

▪ 기존 냉동제품은 원칙적으로 냉동상태의 유통만 허용(해동 후 냉장·실온 유통 불가)되지만, 냉동치즈는 유가공업자(제조업)에 한하여 해동 유통 가능

▪ 개선 해동 권한을 수입판매업자까지 확대, 냉동치즈 완제품상태 해동·유통에 필요한 관리기준 사항 신설

⇒ 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」및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」 개정('18.10월)

④ **경량항공기 제작자 능력확인 검증기준**이 **'수입 KIT항공기'** 위주로 되어 있어 국내에서 **'직접 설계·제작'**하는 경우에 적용할 **기준이 미비**하여 **검증 곤란**, 국내에서 설계·제작하는 경량항공기 제작자 능력확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**세부기준을 마련**했습니다.

◈ 경량항공기 제작자의 능력확인 검증제도 개선 (국토부)

▪ 기존 경량항공기* 제작사는 안전운항을 위해 제작능력을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제작 가능(능력확인 검증제)

- 검증기준이 '해외수입 KIT항공기**' 제작 능력 확인 위주로 구성, '국내에서 직접 설계·제작하는 경우' 적용할 세부기준 미비로 검증 곤란

* 600kg이하의 비행기, 헬리콥터 등

** 설계에 대한 검증을 마치고, 단순조립(제작)만 하면 되는 경량항공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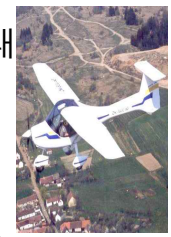

▪ 개선 국내에서 설계·제작되는 경량항공기 제작자 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규정, 생산검사 및 공정관리 등의 세부기준 마련

⇒「경량항공기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 고시」 개정('17.12월)

4. 행정 불합리 해소

① 시·도지사로 제한되어 있는 **'도시재생활성화계획' 승인권자**를 인구 **50만이상 대도시시장**까지로 **확대**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.

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승인권한 지방 이양 확대 (국토부)

▪ 기존 '도시재생활성화계획'을 수립할 경우 해당 시·도지사 승인이 별도로 필요

- 다른 유사한 도시관리계획 등과 달리 '대도시의 경우(인구 50만 이상)'에도 대도시시장이 승인권한이 없어 신속한 계획 수립 곤란

▪ 개선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신속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해 시장이 직접 승인할 수 있도록 개선

⇒「도시재생특별법」 개정('18.6월)

②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부 국책사업인 **임대주택사업**에 **별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**(행안부 주관)를 **면제**하여 **임대주택을 적기에 공급**할 수 있게 됩니다.(4~6월 소요기간 단축)

◈ **정부 매입임대주택사업 지방재정투자심사 절차 면제** (행안부·국토부)

▪ 기존 정부의 연차별 주택공급계획에 따라 확정·추진하는 매입임대주택사업 등의 경우에도 별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*를 거침으로써 4~6개월의 심사기간 소요로 인해 임대주택 적기 공급 지연 우려

* 지방재정을 신규로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투자심사 의무화(지방재정법)

▪ 개선 매년 시행하는 자치단체의 '매입임대주택사업' 및 '공공리모델링 사업'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추진

⇒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추진 기관 협의 및 확정('18.2월)

③ **경미한 식품 표시기준** 위반의 경우 **위반개수에 따라 일괄 처분**하였으나, **위반경중을 고려한 개별 행정처분 기준**이 마련됩니다.

◈ **경미한 식품 표시기준 위반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** (식약처)

▪ 기존 식품안전을 직접적으로 해치지 않는 경미한 표시기준 위반의 경우에도 위반행위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위반개수에 따라 일률 처분*

* 표시위반 처분: (3개미만) 시정명령, (3개이상) 품목제조 15일 정지

▪ 개선 경미한 표시기준 위반 개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삭제, 위반 경중을 고려한 개별 행정처분 기준 마련

⇒「식품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정('18.6월, '19.6월 시행)

④ **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으로 지정**받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**공고가** 나간 후 **일정기간에만 신청**을 할 수 있었으나, 자격요건을 갖추면 **상시 지정신청** 할 수 있도록 **운영절차**를 **개선**했습니다.

◈ **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 지정 절차 개선** (과기정통부)

▪ 기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*은 자격요건을 갖추어도 정부가 정한 별도 공고기간중에만 신청할 수 있어 신규진입 곤란('13년 이후 공고실적 전무)

*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·평가 및 보호대책 수립·지원 수행 기업 (자격요건: 자본 10억원, 기술인력 10명 이상 보유)

▪ 개선 자격요건을 갖추면 상시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운영절차 개선(공고기간 중 신청 → 상시 신청)

⇒「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 지정에 관한 공고」 개정('17.10월)

□ 정부는 **규제신문고 기반의 국민 소통과 참여**를 통해 **'국민 체감형 규제혁신'** 실현을 위해 올해도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.

○ 개선이 확정된 과제는 **후속조치 이행사항 사후관리**를 **철저히** 하여, **현장 착근여부 및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**을 살피겠습니다.

○ 국민참여형 규제혁신의 **속도감을 지속적으로 배가**해 나감으로써 규제신문고가 **'국민 참여의 창(窓)'이자 '국민 소통의 핵심 축(軸)'**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.

※ (붙임) 규제신문고 주요사례 에피소드

참고 **규제신문고 주요사례 에피소드**

공공임대아파트 단지내 가정어린이집 허용
[에피소드1] 공공임대아파트에는 가정어린이집이 없다?

□ 맞벌이 부부 A씨는 임대아파트에 당첨되어 가게부담이 컸던 월세 부담에서 해방된 기쁨도 잠시 2살배기 아기를 마땅히 맡길 곳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.

○ A씨는 최근 LH공사에서 공급한 임대아파트에 당첨되어 입주를 기다리고 있으나, 아파트내에 어린이집이 턱없이 부족하여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당첨 취소를 해야 할지 고민해 빠져 있다.

○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월세 부담이 있지만, 바로 1층에 가정어린이집이 있어 어린애기를 별다른 어려움 없이 쉽게 맡길 수 있지만,

○ 임대아파트는 주거가 의무사항이다 보니 관리동 건물에 어린이집이 한 곳 있을 뿐 아파트내 가정어린이집이 없어, 10분정도 거리에 있는 어린이집에 맡겨야 할 형편에 놓이게 되었다.

○ 아침부터 육아와의 전쟁이 뻔한 사항으로, 임대아파트 입주에 남편은 반대하고 있고, 가정어린이집이 없는 임대아파트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규제개혁신문고에 제도개선을 요청하였다.

□ 이에, 국토부는 보건복지부, LH 등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한 결과

○ 보육 수요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정어린이집이 임대아파트에 설치할 수 없어 맞벌이나 다자녀 가구가 많은 입주자들의 보육 부담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여, 법률 개정을 통해 '18.04월부터 가정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.

□ 이번 규제개선으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의 보육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임대아파트가 진정한 내집마련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.

어르신 낙상방지용 엉덩이 에어백 허용
[에피소드2] CES 대박상품도 국내에선 생산도 판매도 곤란?

□ A기업은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료·비의료 기기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중소기업이다.

○ 세계적으로 초고령화 추세가 확대되면서 낙상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 건강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낙상에 대비한 신체충격 완화장치(이하 '인체보호용 에어백')를 개발하게 되었다.

○ 정부에서도 관련 제품 개발의 필요성과 가치를 인정하여 '13년부터 2회에 걸쳐 총 20여억 원을 지원하였다.

* 산업자원부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과제('13~'16) : 고관절 보호용 낙상에어백
* 보건복지부 고령친화제품연구개발사업('15~'18) : 두부·요추 보호용 착용형 에어백

□ 그런데, A기업은 최근 제품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였으나,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 진출을 목표로 제품 양산과 판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화약류 규제의 벽에 부딪쳤다.

○ 문제는 이 '인체보호용 에어백'의 핵심부품인 '가스발생기'가 국내 생산품이 없어 불가피하게 외국에서 수입해야하는데,

○ 이 가스발생기에 미량의 화약이 포함되어 있어 화약류로 취급하여 수·출입, 제조, 판매 과정에서 까다로운 허가절차가 따른다.

○ 그러나 특이하게도 자동차 에어백에 사용되는 '가스발생기*'는 이 회사의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와 동일한 부품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이러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.

* 자동차 에어백용 가스발생기는 분해 시 화약이 연소되는 구조로 악용가능성이 없어 '96년부터 제조 외에는 허가 없이 판매·소지 가능

○ 한편, 해외에서는 가스발생기에 대한 규제가 없거나 낮은 수준으로 관련 제품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2018 소비자가전전시회(CES)에서 '인체보호용 에어백'('힙에어', 프랑스)이 주목을 받기도 했다.

□ 결국, A기업은 정부정책과제로 개발한 ‘인체보호용 에어백’을 국내에서는 생산하지 못하고 외국에서 생산, 국내로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,

○ ‘자동차 에어백용 가스발생기’와 규격·기능 등이 동일한 부품임에도 용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해외와 달리 과도한 규제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규제개혁신문고에 제도개선을 요청하였다.

□ 이에, 국무조정실은 동일한 가스발생기의 쓰임새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, 다만, 국민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소관부처인 경찰청 등 관련 기관 및 기업, 전문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한 결과,

○ ‘가스발생기’에 대한 국가별 제품규격과 전문기관에서 제시하는 기술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기준을 마련한 후 그 안전기준에 부합되는 가스발생기일 경우에는 자동차 에어백용 가스발생기와 마찬가지로 화약규제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하였다.

○ 금년 내 관련법령* 개정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면 안전기준에 맞는 모든 ‘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’는 각종 화약류 규제에서 자유로워진다.

*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개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

□ 이번 규제개선으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‘인체보호용 에어백’ 제품이 국내 시판뿐만 아니라 세계시장 수출이 앞당겨짐에 따라 국민 건강증진과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.

○ 더불어, 다양한 인체보호용 상품 개발을 유도하여 의료산업과 연관산업 분야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.

온라인쇼핑몰업체 건축물 용도규제 합리화
[에피소드3] 인터넷 판매업체에선 달걀과 고기는 살 수 없다?

□ A씨는 바쁜 직장생활에 장보기가 쉽지 않아 로켓배송으로 유명한 B기업을 통해 생활용품 뿐만 아니라 채소, 과일, 쌀 등 다양한 식품 등을 구입하는 맞벌이 주부이다.

○ 하지만, 이상하게도 고기 및 계란 등은 판매하지 않아, 고기를 좋아하는 남편과 아이의 필수 반찬인 계란 때문에 인근 마트에 가는 것이 매번 번거로워 B기업의 고객센터에 고기 및 계란 등 판매를 건의하게 되었다.

○ B기업에서는 같은 내용의 고객 건의가 다수 접수되고 시장선점을 통해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여 OO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였으나,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용도가 '근린생활시설'에서만 축산물판매업이 가능하고 B기업의 현 소재지의 용도는 '업무시설'이라는 이유로 영업신고가 반려되었다.

○ 이에 B기업은 상품을 현지에서 바로 고객에게 배달되는 인터넷 판매업체를 매장이 있는 점포와 똑같이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규제개혁신문고에 제도개선을 요청하였다.

□ 동 건의를 접수한 국무조정실과 식약처에서는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한 결과,

○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고, 별도의 관리시설 등의 설치의무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인터넷 통신판매업체에 한하여 건축물용도가 업무시설인 경우 축산물판매업 영업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도출하게 되었고, 동 내용을 각 시·도에 '18.1월에 안내하였다.

□ 이번 규제개선으로 소비자는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고기 등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, 인터넷 판매업체는 시장영역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.